

서울신학대학 학보사 사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사는 “서울신학대학교 학보사”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내에 두며, 서울신학대학교의 부속기관이 된다.
(학칙 제51조에 의거)

제3조 (목적) 본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1) 본교 교육이념과 신조의 실현을 도모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한다.
- 2) 건전한 학내 언론을 창달하며, 학문과 신앙의 교류를 증진한다.
- 3) 등본 및 교회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제4조 (제호) 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제호는 "서울신학대학보"라 칭한다.

제5조 (발행)학보는 월1회 발행하며, 한글표기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단, 방학중에는 휴간한다.)

제6조 본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 1) 서울신학대학보 발행
- 2) 학술활동 및 문화활동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7조 본사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발행인 2) 주간교수 3) 학보사 위원회
- 4) 편집위원회 5) 편집장 6) 인쇄인
- 7) 정 기자 8) 수습기자 및 수습보

제8조 (임무, 자격, 임기)

1) 발행인

본사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 본사의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주간교수

본교 교수 중 발행인이 임명하며, 본사운영을 주관한다.

3) 학보사위원회

가) 학보사위원회는 주간교수와 총장이 임명하는 교무직원 2명 총학생장, 편집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간교수가 된다.

나) 학보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동 위원회의 심의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聖. 학보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聖. 학보사 편집장 임명에 관한 동의

- 聖. 기자 임명에 관한 동의
- 聖.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聖. 기타 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

- 가) 편집위원회는 주간과 수습기자를 포함한 기자단 전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주간교수가 된다.
- 나)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결은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다) 편집위원회는 신문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라) 편집위원회에는 학술부, 사회부, 취재부, 문화부 등을 두며, 서기와 회계를 둔다.
- 마) 편집위원회는 사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5) 편집장

- 가) 편집장 선출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기자총회 직전학기 평점이 3.00 이상인 자로서 매년 정기 기자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기자가 참석하여 3분의 2이상의 득표자로 학보사위원회의 동의로 임용한다.<개정 2005. 9. 1, 2006. 9. 7>
- 나) 정 기자만이 편집장 후보 자격이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다) 기자총회에서 선출된 편집장은 주간의 제청으로 학보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행인이 임명한다.
- 라) 편집장은 주간의 지도하에 신문편집, 제작 및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6) 인쇄인

- 본지를 인쇄하는 계약신문사 대표는 인쇄인이 된다.

7) 정 기자

- 정 기자는 본교 재학생으로서 임명학기 직전학기 평점이 3.00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간의 수습기자 기간을 거친 자로서, 편집위원회에서 내정하고, 주간의 제청으로 학보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행인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용이 가능하다.<개정 2005. 9. 1, 2006. 9. 7>

8) 수습기자 및 수습보

- 가) 삭제<2006. 9. 7>
- 나) 수습보는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사가 실시한 공개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간교수가 임명한다.<개정 2006. 9. 7>
- 다) 소정의 기간 동안 신문이론 및 본사운영의 훈련을 받은 수습보 기간을 거쳐 수습기자로 임명된다.
- 라) 수습기자는 6개월간 신문제작 및 본사활동에 보조, 참가한다.

제9조 (기자의 의무와 권리) 1) 본사 기자는 편집회의 및 기자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기능별, 분야별로 부과된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2) 본사 기자는 총장이 인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3) 본사 기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재 정

제10조 (운영자금) 본사의 운영자금은 학교보조금, 사업수익금, 찬조금, 광고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 (회계년도) 본사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부 칙

제12조 (개정) 본 사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학보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발행인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관례) 본 사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 1) 본 규정은 197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0년 3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82년 3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87년 4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88년 11월 2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사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5항, 7항은 2006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사칙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8조 5항, 7항, 8항은 2006년 9월 7일부터 적용한다.